

칼럼

어디까지 노동시간으로 볼 것인가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다. 시행대상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은 최장 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52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1주간 휴일을 포함해 7일을 말한다.

문제는 어디까지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은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예컨대 운송업을 하는 회사에서 화물의 하역을 하는 동안 트럭 안에서 그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다. 이러한 시간 운전기사는 차내에서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시간도 근무시간이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실제로 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은 물론이지만 사용자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 된다. 위 예시처럼 운송업의 경우에는 짐의 적하를 할 때까지 그 대기시간 동안 차량 내에서 특별히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책을 읽고 있거나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기시간 동안은 근로시간과 다르지 않다. 당연히 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실제로 근로할 의무를 지고 있는 시간, 반드시 실제로 심신을 활용해 작업하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작업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상태를 말하므로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 또는 작업 전후의 준비 및 정리 등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최창보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연구교수

있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당연하고 원칙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면 근로시간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좋을까.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지 여부이다. 예컨대 휴식시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기 시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보장돼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휴게시간에 근로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대기시간은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차내에서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을 수는 있어도 언제든지 짐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로자는 비록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롭게 그 시간

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정부의 행정해석 중 대부분은 동의하지만 근로자가 회식에 참가하는 경우는 동의하기 어렵다. 근로시간에 관한 행정해석에서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회식 등 행사 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합치되면 그 보상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해 준다. 다시 말해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회식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회식이 직접적으로 노무제공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을 통해 회사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배종속관계 하에서 이뤄지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담보돼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휴식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의 경우처럼 회식의 주최자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된다. 그리고 회식의 비용을 누가 부담했고 참석에 대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책상 위의 세상

신록(新綠)과 만추(晩秋) 예찬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 사시를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 중에도 그 혜택을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 중에도 그 혜택을 가장 아름답게 내는 것은 봄, 봄 가운데도 만산에 녹엽이 싹트는 이때일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에 나왔던 이양하 선생의 수필 '신록예찬'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에 대해 절대적인 동감을 나타내는 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계절의 낭만은 가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을을 이야기할 때 당연지사처럼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를 손꼽아 말한다. 하늘은 정말 맑고 푸르고 높음을 노래하는 것은 좋으나 왜 사람의 경우가 아닌 말이 살찌는 경우를 예로 삼는지 섣불리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도시 발전으로 인해 산과 들, 바다가 많이 사라져 가는 '자연 실종'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가을하면 코스모스나 잡자리,

단풍 등 자연적인 표현이 우선했다. 시와 노래가사 말에서도 이러한 자연의 요소를 낭만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그만큼 가을이라는 계절에 대한 감상적인 정서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가 바로 사람이기에 느끼는 것이 아닐까. 물론 동물들도 감정을 느끼기는 하지만 정서(情緒)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기분 또는 분위기'라는 뜻처럼 일반적으로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 여운을 남기는 의미가 있다.

신록예찬의 신록은 봄에 새로 나온 잎의 연두 빛을 나타내는 것처럼 봄이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려 새 출발, 새 희망 등 새로 시작하는 희망과 기대 그리고 자신감을 함축한다.

하지만 가을예찬은 가득함이다. 그래서 소리 없이 오는 초가를 보다 깊은 느낌을 주는 만추가 풍요로운 것이다.

푸른 잎이 우거진 녹음(綠陰) 보다 신록이 주는 의미를 더 높이 예찬하듯이 가을 역시 여름

더위를 씻어주는 초가를 보다 알록달록 짙은 컬러의 물결인 단풍이 넘실대는 만추를 더 높이 외치지 않는다.

이제 가을이고 곧 만추의 시간이 다가온다. 윤용기 시인의 시 '가을예찬'을 보면 '산들 산들 가을바람 사이로 / 코스모스 하늘 하늘 피어 있다 / 그 위로 고추잠자리가 좋다 / 떨어졌다 다시 잠에서 깨어난다 / 청명한 가을 하늘은 / 추남추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중략)... 익어가는 가을 속으로 / 한없이 빠져들고 만다 / 농익은 밤들이 얼굴을 내밀고 / 얼굴을 붉히는 홍옥이 /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그래서 가을은 마음도 넉넉해지는가 보다 / 나는 그래서 가을이 좋다'라고 가을을 예찬하고 있다.

그렇다. 이양하 선생은 '봄과 신록'을 예찬했지만 필자는 과감히 '풍성한 가을'을 예찬하고 싶다. 아니 윤용기 시인처럼 진정 가을을 예찬하면서 만추의 가득함과 넉넉함으로 외로운 모두를 안고 싶다. 그래서 가을은 낭만의 계절인 것이다. 최환금 편집국장

※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내 서버 설치 의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Open Net)은 이러한 국내 서버 설치 의무법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이터 현지화 또는 국지화(局地化, data localization) 제도와 유사하면서도 더 광범위

업에게 개인정보의 보관·처리를 위한 서버를 반드시 자국 내에 설치하도록 즉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인터넷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온라인에 디지털 장벽을 세워 자유와 개방의 인터넷을 조각내고 파편화시킨다.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감청사태 때처럼 현지 정부와 기업의 감시와 검열로부터 '사이버 망명'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그런데 서두에서 언급한 개정안은 단순한 데이터 현지화가 아닌 광범위한 트래픽 현지화를 내정하고 있다. 외국의 예를 보듯이 대상을 국가안보 목적이거나 자국민의 개인정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를 국내에 두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시대 역행’ 국내 서버설치 의무법안 철회해야

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트래픽 현지화' 제도를 창조하는 것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안 이유로 변 의원은 "망 사용자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접속 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의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서버를 설치하게 해서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사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과징금을 부과한 페이스북 접속 경로 임의변경 건인데 대응책으로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과 같은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 Content Providers)에게 무조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게 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정안의 더 큰 문제는 데이터 현지화의 도입이다. 이는 글로벌 IT 기


국내 서버에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 의한 감시와 검열이 훨씬 쉬워지게 될 것이다.

부가적으로도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국에 서버를 둘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서비스를 아예 못하거나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사업자의 경우도 좀 더 값싼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스타트업 역시 옴므 겨자머기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국내 ISP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제약들은 결국 IT산업의 혁신 저해로 결정될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정보통신부 관련 출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해당 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정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법 개정안은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p>세계로컬신문 THE SEGYELOCAL SHINMUN</p> <p>• 발행인 : 박 귀 중 • 인쇄인 : 정 희 택 • 편집인 : 우 상 규 • 편집국장 : 최 환 금</p> <p>• 대표전화 : (02)2000-1687 • 주소 : 03175 서울특별시 중로구 경희궁길 26 • 구독료 : 월 10,000원 • 이메일 : news@segyllocal.com</p>	<p>www.segyllocalnews.com</p> <p>• Fax : (02)2000-1699 • 구독신청 및 광고 안내 : (02)2000-1687 • 2016년 6월 2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 다5031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	--

글로벌시대의 동반자



세계로컬신문 (사)세계일보 조사위원회

세계일보 조사위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로컬신문은 사단법인 세계일보 조사위원회와
손 잡고 함께 나아갑니다

